

경영 관련 자료(제10조제2호 관련)

1. 수산물 생산자

가. 수산종자의 구입, 자연 채취·포획 또는 자가생산에 관한 사항 및 병성감정을 기록한 자료: 품목명, 일자별 구입처(또는 자연 채취·포획이나 자가생산 장소)·구입량(또는 자연 채취·포획량이나 자가생산량), 병성감정에 관한 기록 및 증명

나. 사료의 생산·구입 및 투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사료명, 사료의 종류, 일자별 생산량·구입량·투여량,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예방 또는 치료 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사용한 물질명, 일자별 사용량, 사용 목적, 구매 영수증

라.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구매·사용·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약품명, 일자별 구매량·사용량·보관량, 구매 영수증

마.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: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

바. 수산물의 생산량·출하량 및 출하처 별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품목명, 일자별 생산량, 일자별·출하처별 판매량

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(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,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)으로 하되, 양식 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(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)의 범위에서 그

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2. 가공식품의 제조·가공자 및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취급자

가. 원료로 사용한 수산물·가공식품의 입고·사용·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원료명, 일자별 입고량·사용량·보관량, 공급자 증명서

나. 제조·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: 물질명, 일자별 사용량, 사용 목적,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 별 판매량: 품목명, 일자별 생산량, 일자별·거래처별 판매량

라. 인증품의 취급(저장, 포장, 운송, 수입 또는 판매) 과정에 대한 자료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3개월간으로 한다.